

##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등록법 제2조 제2항에 의거 구청장이 관장하는 주민등록사무에 관한 권한중 그 일부를 동장에게 위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주민등록법 (이하 “법”이라 한다) ..... ...서울특별시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
제2조(권한의 위임)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관장하는 권한중 다음 각호의 사무를 제외한 기타 사무는 동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17조의8 및 영 제36조 제1항에 의한 주민등록증 발급과 용지의 관리 등에 관한 사항 2. (생략) 3. 법 제20조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 4. (생략)	제2조(권한의 위임) 구청장 ..... ..... ..... 1. .....주민등록법시행령 ..... 2. (현행과 같음) (삭제) 3. (현행 제4호와 같음)

## 서울특별시마포구행정권한위원회

## 조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995. 9. 4.

총무재무위원회

##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95.8.23. 마포구청장

나. 회부일자 : 95.8.24.

다. 상정일자 : 제33회 임시회 제7차위원회 ('95.9.4) 상정, 심사, 의결

##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이은규 기획예산과장)

## 가. 제안이유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켜 행정능률의 향상과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서울특별시마포구행정권한위임조례를 정비하여 각종 법령에 규정된 서울특별시마포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구의회사무국장, 보건소장 및 동장에게 위임하려는 것임.

## 나. 주요골자

- 허가, 인가, 등록 등 민원에 관한 사무 및 일상적으로 반복되는 사무중 그 일부를 수임기관에 위임토록 하는 등 위임의 일반적인 기준을 규정(안 제2조)

- 위임기관은 수임기관에 대하여 사전승인등의 요구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

- 위임사무의 종류 94개 사무를 별표로 규정함(안 제5조)

## 3. 전문위원 겸토보고의 요지(전문위원 박관수)

○ 종전에는 구청장이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과 소속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하고자 할 때에는 조례로 정해야만 위임할 수 있었던 것이 94.12.20 지방자치법 제95조제1항의 규정이 규칙으로도 위임할 수 있도록 개정됨으로써 구청장의 고유권한사무는 조례로 정하여 위임하고 구청장에게 위임된 수임사무는 규칙으로 정하여 재위임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인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 제4조와 서울특별시행정권한위임조례 제3조에 규정되어 있음.

○ 동 조례안의 내용을 보면 현행조례에서 정한 위임사무중 별표 제25호에 규정된 독극물판매업에 관한 6개 사무는 그 근거법인 독물및국물에관한법률이 폐지되고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으로 대체되면서 서울시장에게는 권한이 위

임되었으나 구청장에게는 재위임되지 아니하여 삭제하는 것이며, 서울시장으로부터 구청장에게 위임된 24개의 수임사무는 규칙으로 재위임하기 위하여 삭제되는 것으로,

- 동 조례안에서 정하는 위임사무를 수임기관별로 구분하면 구의회사무국장 2개, 보건소장 82개, 동장에게 10개 등 총 94개의 위임사무로 그중 신규로 위임되는 19개의 사무는 보건소장에게 위임되는 것이고 43개의 사무는 기존 위임사무에서 그 위임범위가 확대·조정되는 것으로 이는 불합리한 위임사무 내용을 정비·보완하여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구분하므로 행정능률을 향상시키고 주민편의를 도모하려는 동조례의 개정은 다소 늦은 감은 있으나 적절한 조치라고 사료됨.

#### 4. 질의 및 답변요지

- 질문요지(김종열위원) : 개정조례안 제2조 제2항에 구청장은 사무를 위임하고자 할 때에는 수임기관의 수임능력 여부를 점검하고 필요한 예산을 배정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조례안 개정으로 인하여 예산배정의 필요성이 있는지?
- 답변요지(이은규 기획예산과장) : 기 위임된 사무는 기 예산조치가 되어 있고, 금번 추가된 위임사무는 특별히 예산조치의 필요성이 없으며 다만, 추후에 예산조치의 필요성이 발생시 예산조치도록 하겠음.

#### 5. 토론요지 : 없음

####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 7.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 8. 기타사항 : 없음

#### 서울특별시마포구행정권한위임조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4
----------	----

제출일자 : 1995.8.23.

제출자 : 마포구청장

#### 1. 개정이유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켜 행정능률의 향상과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서울특별시마포구 행정권한위임조례를 정비하여 각종 법령에 규정된 서울특별시마포구청장의 권한에 속하

는 사무의 일부를 구의회사무국장, 보건소장 및 동장에게 위임하려는 것임.

#### 2. 주요개정골자

- 허가, 인가, 등록 등 민원에 관한 사무 및 일상적으로 반복되는 사무중 그 일부를 수임기관에 위임토록 하는 등, 위임의 일반적인 기준을 규정(안 제2조)
- 위임기관은 수임기관에 대하여 사전승인등의 요구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
- 위임사무의 종류 94개 사무를 별표로 규정함(안 제5조)

#### 3. 개정근거

지방자치법(1995.1.5. 법률 제4877호) 제15조 및 제95조

#### 4. 조례(안) : 별첨

#### 5. 예산조치 : 필요없음

#### 서울특별시마포구행정권한위임조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마포구행정권한위임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서울특별시마포구행정권한위임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9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급 행정기관의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각종 법령에 규정된 마포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구의회사무국장, 보건소장 및 동장에게 위임할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임의 기준 등) ① 서울특별시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허가·인가·등록 등 민원에 관한 사무와 정책의 구체화에 따른 집행사무, 일상적으로 반복되는 상규적 사무로서 그가 직접 처리하여야 할 사무를 제외하고는 위임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사무를 위임하고자 할 때에는 수임기관의 수임능력 여부를 점검하고 필요한 예산을 배정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3조(지휘감독 및 책임) 구청장은 위임한 사무처리에 대하여 일반적인 기준에 따라

지휘·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제4조(사전승인등의 억제) 수임사무의 처리에 관하여 위임기관은 수임기관에 대하여 사전승인을 얻거나 협의할 것을 요구할 수 없다.  
 제5조(위임사무) ① 구청장이 구의회사무국장, 보건소장 및 동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별표와 같다.

② 별표에서 허가·인가·등록·면허 및 검사 등이라고 하면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이에 부수되는 사무를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별표)

위    임    사    무			
주 관 국	사    무    명	근    거    법    령	수임기관
총    무    국 (총    무    과)	1. 공무원에 관한 일부 임용권  가. 6급이하 지방공무원 및 기능직 공무원의 구의회내 전보·휴직 및 휴직에 따른 복직, 기능직 공무원의 신규임용(시보임용해제 포함)·의원면직  나. 7급이하 지방공무원 및 기능직 공무원의 소내 전보  다. 소속 공무원에 대한 승급	<input type="radio"/> 지방공무원법 제6조 제2항, 제27조, 제30조 의5, 제60조, 제63조 및 제65조 <input type="radio"/> 지방공무원임용령 제7조 및 제26조 <input type="radio"/> 동법 제6조 제2항 및 제30조의5 <input type="radio"/> 지방공무원임용령 제7조 및 제26조 <input type="radio"/> 동법 제6조 제2항 <input type="radio"/>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6조 <input type="radio"/> 인장업법 제3조 <input type="radio"/> 동법시행령 제1조 및 제2조 <input type="radio"/> 동법 제3조 <input type="radio"/> 동법시행령 제3조 <input type="radio"/> 동법시행령 제4조 <input type="radio"/> 동법 제7조	구의회 사무국장 보건소장 동    장
재    무    국 (세무관리과)	1. 지방세완납증명서 발급  2. 지방세 미과세증명서 발급	<input type="radio"/> 지방세법 제39조 <input type="radio"/> 동법시행령 제19조, 제20조, 제21조 및 제23조 <input type="radio"/> 동법시행규칙 제14조 <input type="radio"/> 동법 제39조 <input type="radio"/> 동법시행령 제19조, 제22조 및 제23조	동    장 동    장 동    장
시민국	1. 시체매장·화장 또는 개장 신고	<input type="radio"/> 매장 및 묘지등에 관	동    장

주 관 국	사 무 명	근 거 법령	수임기관
(사회복지과)		한 법률 제5조 및 제5조의2 <input type="radio"/> 동법률시행령 제1조 <input type="radio"/> 동법률시행규칙제1조	동 장
도시정비국 (건축과)	1. 건축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신고의 수리  2. 건축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수리  3. 건축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응변 등 공작물 축조신고의 수리	<input type="radio"/> 건축법 제9조 및 제71조 제3항 <input type="radio"/> 동법시행령 제11조 및 제117조제4항 <input type="radio"/> 동법 제15조제2항 및 제71조제3항 <input type="radio"/> 동법시행령 제15조제4항 및 제117조제4항 <input type="radio"/> 동법 제72조 및 제71조제3항 <input type="radio"/> 동법시행령 제117조제4항 및 제118조	동 장
	1. 전염병 예방에 관한 다음 사무 가. 전염병환자 또는 의사(擬似)환자에 관한 신고 또는 보고에 따른 환자명부 작성 비치 및 보고 나. 정기 예방접종 다. 임시 예방접종 라. 예방접종의 공고  마. 접종 유예 처리  바. 예방접종증명서 교부  사. 예방접종에 관한 기록작성·보관  아. 예방접종에 관한 보고 접수처리  자. 제1종 전염병 환가(患家)에 대한 방역 조치 차. 소독 조치  카. 소독업무의 대행 조치 타. 예방접종 미보고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징수, 그에 따른 이의제기 처리  2. 기생충 예방을 위한 수거 검사 3. 결핵예방에 관한 다음 사무	<input type="radio"/> 전염병예방법 제7조 <input type="radio"/> 동법시행규칙 제3조  <input type="radio"/> 동법 제11조 <input type="radio"/> 동법 제12조 <input type="radio"/> 동법 제13조 <input type="radio"/> 동법시행규칙 제5조 <input type="radio"/> 동법 제14조 <input type="radio"/> 동법시행규칙 제6조 <input type="radio"/> 동법 제20조 <input type="radio"/> 동법시행규칙 제9조 <input type="radio"/> 동법 제21조 제1항 <input type="radio"/> 동법시행규칙 제10조 <input type="radio"/> 동법 제21조 제2항 <input type="radio"/> 동법시행규칙 제10조의2 <input type="radio"/> 동법 제37조  <input type="radio"/> 동법 제40조 제1항 <input type="radio"/> 동법시행령 제11조 <input type="radio"/> 동법시행규칙 제19조 <input type="radio"/> 동법 제40조의 2 <input type="radio"/> 동법 제21조 제2항 및 제56조의2 <input type="radio"/> 동법시행령 제21조 <input type="radio"/> 기생충질환예방법제4조	보건소장 보건소장 보건소장 보건소장

주 관 국	사 무 명	근 거 법령	수임기관
	가. 예방접종에 관한 기록의 작성·보존  나. 예방접종실시 현황보고 접수처리	<input type="radio"/> 결핵예방법 제19조 제1항 <input type="radio"/> 동법시행규칙 제10조제1항 <input type="radio"/> 동법 제19조 제2항 <input type="radio"/> 동법시행규칙 제10조제2항	
	4. 의료기관에 관한 다음 사무  가. 의원·치과의원·한의원·조산원(이하 “의원등”이라 함)의 개설 신고 수리  나. 의원등의 개설신고사항 변경신고 수리  다. 의원등의 휴업·폐업의 신고수리  라. 의원등의 업무개시 명령 마. 의원등의 보고와 업무검사등 바. 의원등의 시설·장비등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제한·금지 또는 시정명령, 그에 따른 청문 .사. 의원등의 의료업 정지·개설허가 취소 또는 폐쇄명령, 그에 따른 청문 아. 의원등의 과징금부과 및 징수, 그에 따른 청문  자. 의원등의 과태료부과 및 징수, 그에 따른 이의제기 처리	<input type="radio"/> 의료법 제30조 제3항 <input type="radio"/> 동법시행규칙 제22조 <input type="radio"/> 동법 제30조 제6항 <input type="radio"/> 동법시행규칙 제22조의2 <input type="radio"/> 동법 제33조 <input type="radio"/> 동법시행규칙 제24조 <input type="radio"/> 동법 제48조 제2항 <input type="radio"/> 동법 제49조 <input type="radio"/> 동법 제50조 및 제63조의2 <input type="radio"/> 동법시행령 제31조 <input type="radio"/> 동법 제51조, 제53조의3 및 제63조의2 <input type="radio"/> 동법시행령 제31조 <input type="radio"/> 동법 제53조의2 및 제63조의2 <input type="radio"/> 동법시행령 제31조, 제33조 및 제34조 <input type="radio"/> 동법시행규칙 제60조 <input type="radio"/> 동법 제71조 및 제72조 <input type="radio"/> 동법시행령 제35조 <input type="radio"/> 동법시행령 제60조 <input type="radio"/> 의료법 제48조, 제49조 및 제54조 <input type="radio"/> 동법시행규칙 제48조내지 제52조	보건소장
	5. 의료지도원의 배치	<input type="radio"/> 의료법 제31조 제1항 본문 <input type="radio"/> 동법시행규칙 제26조 <input type="radio"/> 동법시행규칙 제22조의2 및 제26조 <input type="radio"/> 동법 제50조 및 제63조	보건소장
	6. 의료기관 개설특례에 의한 부속의료기관에 관한 다음 사무  가. 개설신고수리  나. 개설신고사항 변경신고 수리  다. 시설·장비등의 전부 또는 일부의		보건소장

주 관 국	사 무 명	근 거 법령	수임기관
	사용제한·금지 또는 시정명령, 그에 따른 청문 라. 의료업 정지·개설허가 취소 또는 폐쇄명령과 이에 따른 청문	조의2 ○ 동법시행령 제31조 ○ 동법 제51조, 제53조 의3 및 제63조의 2 ○ 동법시행령 제31조 ○ 동법 제53조의2 및 제63조의2 ○ 동법시행령 제31조, 제33조 및 제34조 ○ 동법시행규칙 제60조	
	마. 과징금부과 및 징수, 그에 따른 청문  7. 접골사, 침구사의 시술소(이하 “시술소”라 함)에 관한 다음 사무 가. 시술소 개설신고수리 및 개설신고 사항 변경신고 수리	보건소장  ○ 의료법 제60조 ○ 동법시행규칙 제22조 ○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제17조 ○ 동법제33조 및 제60조 ○ 동법시행규칙 제24조 ○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제17조	
	나. 시술소의 휴업·폐업신고 수리  다. 시술소의 업무개시 명령  라. 시술소의 보고와 업무검사동	○ 동법 제48조 제2항 및 제60조 ○ 동법 제49조 및 제60조	
	마. 시술소의 시설·장비등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제한·금지 또는 시정명령, 그에 따른 청문  바. 시술소의 의료업 정지 및 개설허가의 취소, 그에 따른 청문	○ 동법 제50조, 제60조 및 제63조의 2 ○ 동법시행령 제31조 ○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제17조 ○ 동법 제51조, 제53조의3, 제60조 및 제63조의2 ○ 동법시행령 제31조 ○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제17조	
	사. 시술소의 과징금부과 및 징수, 그에 따른 청문  아. 시술소의 과태료부과 및 징수, 그에 따른 이의제기 처리	○ 동법 제53조의2, 제60조 및 제63조의2 ○ 동법시행령 제31조 ○ 동법 제60조, 제71조 및 제72조	

주 관 국	사 무 명	근 거 법령	수임기관
	8. 안마시술소(이하 "시술소"라 함)에 관한 다음 사무 가. 시술소 개설신고 수리 나. 시술소의 개설신고사항 변경신고수리 다. 시술소의 휴업·폐업의 신고 수리 라. 시술소의 보고와 업무검사등 마. 시술소의 시설·장비등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제한·금지또는 시정명령, 그에 따른 청문(의료법 제32조 규정에 위반한 경우에 한함) 바. 시술소의 의료업정지·개설허가 취소 또는 폐쇄명령, 그에 따른 청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동법시행령 제35조</li> <li>○ 동법시행규칙 제60조</li> <li>○ 의료법 제30조 제3항 및 제61조</li> <li>○ 동법시행규칙 제22조</li> <li>○ 동법 제30조 제6항 및 제61조</li> <li>○ 동법시행규칙 제22조의2</li> <li>○ 동법 제33조 및 제61조</li> <li>○ 동법시행규칙 제24조</li> <li>○ 동법 제49조 및 제61조</li> <li>○ 동법 제50조, 제61조 및 제63조의2</li> <li>○ 동법시행령 제31조</li> <li>○ 동법 제51조, 제53조의3, 제61조 및 제63조의2</li> <li>○ 동법시행령 제31조</li> </ul>	보건소장
	9. 안경업소에 관한 다음 사무 가. 개설등록 나. 휴업·폐업 및 개설등록 사항 변경신고 수리 다. 보고와 검사등 라. 시정명령, 영업정지 또는 등록 취소, 그에 따른 청문 마. 과태료부과 및 징수, 그에 따른 이의제기 처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의료기사법 제13조의4</li> <li>○ 동법시행규칙 제15조 및 제16조</li> <li>○ 동법 제13조의5</li> <li>○ 동법시행규칙 제18조</li> <li>○ 동법 제13조의6</li> <li>○ 동법 제13조의7 및 제13조의8</li> <li>○ 동법시행령 제11조</li> <li>○ 동법 제17조의2 및 제17조의3</li> <li>○ 동법시행령 제15조</li> <li>○ 동법시행규칙 제19조</li> </ul>	보건소장
	10. 치과기공소에 관한 다음 사무 가. 인정 나. 휴업·재개업 또는 폐업, 인정사항 변경신고 수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의료기사법 제3조</li> <li>○ 동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5호 및 제4항</li> <li>○ 동법 제3조</li> <li>○ 동법시행령 제2조 제1</li> </ul>	보건소장

주 관 국	사 무 명	근 거 법령	수임기관
	다. 양수신고 수리	항 제5호 및 제4항 <input type="radio"/> 동법시행규칙 제13조제4항 <input type="radio"/> 동법 제3조 <input type="radio"/> 동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5호 및 제4항 <input type="radio"/> 동법시행규칙 제13조제5항 <input type="radio"/> 동법 제3조 <input type="radio"/> 동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5호 및 제4항 <input type="radio"/> 동법시행규칙 제14조	
	라. 업무사항 조사, 업무정지 또는 인정취소		
	11. 약국에 관한 다음 사무		보건소장
	가. 약국개설 등록 및 등록된 사항 변경등록	<input type="radio"/> 약사법 제16조 <input type="radio"/> 동법시행규칙 제8조 및 제9조	
	나. 약국 폐업·휴업·재개 신고 수리	<input type="radio"/> 동법 제20조 <input type="radio"/> 동법시행규칙 제84조	
	다. 약국관리자 승인	<input type="radio"/> 동법 제19조 <input type="radio"/> 동법시행규칙 제10조	
	라. 약국제제의 제조품목 신고 수리	<input type="radio"/> 동법 제33조 <input type="radio"/> 동법시행규칙 제15조 내지 제19조	
	마. 보고와 검사등	<input type="radio"/> 동법 제64조	
	바. 업무개시 명령등	<input type="radio"/> 동법 제64조의2	
	사. 폐기명령등	<input type="radio"/> 동법 제65조	
	아. 개수명령	<input type="radio"/> 동법 제67조	
	자. 관리자등의 변경 명령	<input type="radio"/> 동법 제68조	
	차. 등록취소와 업무정지등, 그에 따른 청문	<input type="radio"/> 동법 제69조 및 제69조의2 <input type="radio"/> 동법시행규칙 제89조 및 제90조	
	카. 약사 감시원의 배치	<input type="radio"/> 동법 제70조	
	타. 등록증 등의 개선 및 재교부	<input type="radio"/> 동법 제71조의2	
	파. 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 그에 따른 청문	<input type="radio"/> 동법시행규칙 제93조 <input type="radio"/> 동법 제71조의3 및 제69조의2 <input type="radio"/> 동법시행령 제30조 <input type="radio"/> 동법시행규칙 제90조 및 제91조	
	하.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 그에 따른 이의제기 처리	<input type="radio"/> 동법 제79조 <input type="radio"/> 동법시행령 제31조 <input type="radio"/> 동법시행규칙 제91조	
	12. 의료용구의 판매업에 관한 다음 사무		보건소장

주 관 국	사 무 명	근 거 법령	수입기관
	<p>가. 등록 및 등록된 사항 변경등록</p> <p>나. 보고와 검사등</p> <p>다. 폐기 명령등</p> <p>라. 개수 명령</p> <p>마. 등록증의 재교부</p> <p>바. 등록취소와 영업정지등, 그에 따른 청문</p> <p>사. 과태료부과 및 정수, 그에 따른 이의제기 처리</p> <p>13.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설치에 관한 다음 사무</p> <p>가. 설치신고 수리 및 신고필증 교부</p> <p>나.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양도 또는 폐기신고 수리 및 신고필증 교부</p> <p>다. 방사선 관계 종사자의 변동사항 신고 처리</p> <p>라.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관리대장 작성·비치 및 관리</p> <p>마. 의료기관의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상태 지도·감독</p> <p>바. 과태료 부과 및 정수, 그에 따른 이의제기 처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약사법 제42조</li> <li>○ 동법 제64조</li> <li>○ 동법 제65조</li> <li>○ 동법 제67조</li> <li>○ 동법시행규칙 제93조</li> <li>○ 동법 제69조 및 제69조의2</li> <li>○ 동법 제79조</li> <li>○ 동법시행령 제31조</li>   <li>○ 의료법 제32조의2</li> <li>○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제3조 제1항 및 제2항</li> <li>○ 동법 제32조의2</li> <li>○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제3조 제1항 및 제2항</li> <li>○ 동법 제32조의2</li> <li>○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제3조 제3항</li> <li>○ 동법 제32조의2</li> <li>○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제3조제4항</li> <li>○ 동법 제32조의2</li> <li>○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제16조제1항</li> <li>○ 동법 제71조 제1항 및 제72조</li> <li>○ 동법시행령 제35조</li> <li>○ 동법시행규칙 제60조</li> </ul>	보건소장